

國際貿易去來에서 電子式 通信文의 使用에 따른 賣買契約上の 問題點

韓 成 一*

目 次

-
- | | |
|--|--|
| I. 序 論 | 2. 費用負擔의 問題 |
| II. EDI 방식에 의한 賣買
契約成立의 問題 | IV. EDI 방식의 賣買契約履行에
따른 電子式通信文의 法理問題 |
| 1. 賣買契約의 成立方法 | 1. 證憑資料로서 認定性 問題 |
| 2. 賣買契約의 成立時期 | 2. 電子式 署名에 의한 眞正性
問題 |
| 3. 賣買契約의 成立場所 | 3. 電子式 通信文의 形式上的
問題 |
| III. EDI 방식에 의한 賣買契
約履行上の 危險 및 費用
負擔의 問題 | V. 結 論 |
| 1. 危險負擔의 問題 | |
-

I. 序 論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情報傳達 手段인 컴퓨터와 通信技術의 급속한 발전으로 情報化時代를 맞이하고 있으며, 情報通信의 신속한 발전은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情報傳達의 體系 및 그 節次를 簡素化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國際貿易의 규모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貿易手續의 簡素化, 貿易書類의 簡素化 및 費用의 절감을 위해 새로운 通信手段인 電子資料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고 稱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諸般 貿易去來節次의 획기적인 簡素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 東洲女子專門大學 貿易事務自動化科 助教授.

즉, 貿易自動化를 통해 書類없는 貿易節次(paperless trade procedure)의 實現과 貿易業務의 情報化 時代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EDI에 의한 電子書類通信의 등장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通信에 의하여 文書의 作成과 傳達이 迅速·正確하게 이루어지고, 文書處理의 誤謬도 방지되게 되었다. 종래의 전통적인 情報處理의 短點이었던 遲延, 不正確, 費用의 增大 등이 EDI에 의한 電子方式으로 신속한 처리, 컴퓨터에 의한 情報의 判讀이 가능해짐에 따라 正確性 및 標準 電子式 通信文의 이용에 의한 費用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美國, 日本, 濠洲, EC 國家 등 先進國들은 貿易業務 自動化 事業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 있으며 이들과의 貿易이 우리 나라 總貿易의 80%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國家는 가까운 장래에 EDI 方式에 의한 去來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電子式 通信文의 사용이 國際去來에 까지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EDI의 이용은 현재는 초보단계이지만 장래 國際貿易에서 그 機能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DI에 의한 貿易節次의 變化는 종래 종이 書類를 기초로 하던 國際貿易에 급격한 問題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특히 EDI 通信文으로 賣買契約을 履行할 경우 기존의 書類方式과 상이한 通信手段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에 따른 賣買契約締結方法이 다르며, 賣買契約의 履行에 있어서 종래와 다른 危險負擔問題와 費用負擔問題가 대두되게 된다. 또한 電子式 通信文을 사용할 경우 電子式 通信文 自體의 法理的 問題가 대두되게 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國際貿易去來에서 EDI에 의해 電子式 通信文이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賣買契約上の 履行에 따른 諸般 問題點과 電子式 通信文의 法理的 問題를 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應方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電子式 通信文의 사용에 실무적으로 一助를 하고자 한다. 本 研究를 수행함에 있어 아직 EDI의 구체적인 資料나 判例가 빈약하고, 先行研究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實證的 檢討의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本人은 國內外의 各種 規則이나 法規등을 分析道具로 삼고 國內 및 國外的 論文 및 著書を 중심으로 하는 文獻中心의 研究方法을 수행하였다.

本 研究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第II章에서는 EDI로 賣買契約을 締結할 경우 이에 따른 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問題로서 賣買契約의 成立方法, 成立時期 및 成立場所에 관하여 檢討하였으며, 第III章에서는 EDI의 사용에 의한 賣買契約履行에 따른 危險負擔 및 費用負擔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分析하였다. 第IV章에서는 EDI의 사용에 의한 電子式 通信文自體의 法理的 問題點을 分析함에 있어 그 電子式 通信文이 證憑資料로서 認定이 되는가 하는 問題와 電子式 署名이 眞正性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 및 電子式 通信文의 形式에 관한 問題點을 分析·檢討하였다. 上記의 問題點 分析은 賣買契約 뿐만아니라 運送契約, 保險契約 및 換契約까지 적용이 가능하나, 賣買契約이 主契約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賣買契約의 履行上의 問題나 法理的 問題를 分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第V章 結論에서는 電子式 通信文의 사용에 따른 問題點들의 要約 및 對應方案을 제시하였다.

II. EDI 방식에 의한 賣買契約成立의 問題

1. 賣買契約의 成立方法

貿易賣買契約은 物品의 國際的인 賣買契約이고, 賣買契約은 契約法의 一般理論에 따른다. 契約法上 契約成立은 當事者間 意思의 一致가 필요하지만, 보통 當事者 一方이 契約의 請約을 행하고, 다른 當事者가 그것을 承諾한다는 意思의 合意에 의하여 契約이 成立된다. 그러므로 賣買契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하나

의 請約과 하나의 承諾에 의해 성립된다. 따라서 賣買契約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請約과 承諾은 그 자체로서 意思表示의 效力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로써 서로 對立關係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賣買契約의 成立을 法的 側面에서 살펴 보면 ① 同意의 眞實性, 즉 當事者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合意(manifestation of mutual assent)라야 한다. ② 約因(consideration)¹⁾이 있어야 한다. ③ 去來의 目的物, 去來의 方法이 合理的(legality of object)일 것. ④ 當事者들의 行爲能力(capacity of the parties) 있을 것 등이다.²⁾

또한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賣買契約의 成立方法에 관하여는 請約에 대한 同意表示의 承諾은 書面에 의해 證明될 필요는 없고, 그 方法에 관하여 一切의 要件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證言에 의하여 (by means of witness) 證明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³⁾ 承諾의 方法은 원칙적으로 自由로 하고 있다. 그러나 請約者에 의해 承諾의 方法이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方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⁴⁾ 賣買契約締結의 方法은 통상 請約時에 承諾의 方法이 指定되어진 경우에는 指定된 通信手段을 이용하여 承諾해야 하며, 다른 手段을 이용할 경우에는 請約者(offeror)의 承認이 없다면 그 賣買契約은 무효로 된다.⁵⁾ 그러나 實務에서는 請約者는 請約時 時間, 場所 및 承諾方法의 通信手段을 指定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指定된 通信手段으로 承諾을 해야 하며, 指定通信手段이 없는 경우에는 合理的 方法으로 承諾해야 한다.⁶⁾

1) 여기서 約因이란 約束과 交換으로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것, 즉 約束者의 利益이나 受約者의 不利益을 의미한다(A.G. Guest,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1984, p.78).

2) 吳世昌, 貿易契約論, 東星社, 1991, pp.41-51.

3)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統一法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 第3條 參照.

4) 末川, 契約法(上卷), 岩波書店, 1975, p.43.

5)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p.266.

6) Michael S. Baum and Henry H. Perritt. JR., *Electronic Contracting*,

통상 賣買契約의 成立方法의 手段으로서는 書面이나, 電話, 對談, 電報, 텔렉스 및 팩시밀리에 의한 것이 있지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具體的 方法에 대해서는 各國間에 異見이 많다. 즉, 美國의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UCC)은 “\$ 500 이상의 物品賣買契約은 當事者 사이에 契約締結을 立證하기에 충분한 書面的인 證據가 있고, 또한 法的 拘束力이 있는 兩當事者의 署名이 있는 경우에만 契約으로서의 法的 效力이 있다”⁷⁾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法에서도 10 파운드 이상의 賣買契約은 文書署名에 의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⁸⁾

그러나 컴퓨터의 普及과 通信施設의 발달로 인하여 EDI를 이용하여 契約을 締結하거나 또는 法的 拘束力이 있는 契約當事者間의 合意의 證據로서 EDI에 의한 電子式 通信文이 傳統的 종이 書類나 기타 手段을 대신하여 점점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國際規則들도 EDI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을 행하였다. 즉 1990年 개정된 Incoterm 에서는 電子式 通信文을 送受信하는 이른바 EDI 方式이 보편화될 것 에 대비하여 文書나 書類形式에 의한 書類의 交換에 이어 電子式 通信文에 의한 각종의 書類를 相互交換이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第5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에서도 ED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EDI 方式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종래의 書類方式이 실무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1990)에서는 종래의 書類方式과 함께 새로운 EDI方式을 제시하여 두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當事者들이 合意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問題는 EDI에 의해 賣買契約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契約法의 基本적 인 法理에 대하여 EDI 技法의 應用, 즉 請約과 承諾을 통지하는 手段에 대한 法則에 관하여 EDI를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있다.⁹⁾

Publishing and EDI Law, Wiley Law Publications, 1991, p.323.

7) UCC 第2-201條.

8) The Statute of Frauds 第17條.

實務的으로 EDI를 이용하여 賣買契約을 締結하는 경우 어떤 問題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契約成立의 手段으로서 EDI를 이용하는 경우에 約因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수적인 問題를 야기하지 않는다.¹⁰⁾ 즉, 契約은 請約과 承諾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 請約과 承諾은 口頭, 書面 또는 기타 行爲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EDI에 의한 請約과 承諾도 有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請約의 手段이 EDI이면 承諾도 EDI에 의한 通信手段을 이용하면 된다.

EDI에 의해 賣買契約을 締結할 경우 EDI의 使用方法에 따른 接續 形態로서 파일 傳送型과 對話型이 있으며, 파일 傳送型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¹¹⁾

또한 EDI에 의한 通信의 連結方法으로서는 當事者들만이 通信을 연결하여 賣買契約을 성립시키는 방법이 있고, 附加價值通信網(Value Added Network: 以下 “VAN”이라 稱함)을 經유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EDI에 의한 賣買契約締結은 여러 法的 차원에서도 VAN을 통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兩當事者들은 「EDI 去來에 관한 協定書」 혹은 「電子去來覺書」를 교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協定書 및 覺書는 兩當事者 間의 「情報傳達規約」 및 「情報表現規約」으로 사용하고,¹²⁾ VAN 事業

9) Ian Walden, *EDI and The Law*, London, Blenheim Online Ltd., 1989, p.44.

10) *Ibid.*

11) 파일 傳送型이란 傳送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일정한 파일(file)로 묶어 일괄적으로 傳送하는 形態를 말하며, 이에 반하여 對話型은 컴퓨터앞에 앉아 傳送되어온 데이터를 受領하고 이에 대한 回信을 즉시 傳送할 수 있는 形態를 말한다. 對話型은 EDI에 있어 많은 法的 問題點이 예상되기 때문에 파일 傳送型을 前提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12) EDI에는 시스템間的 相互接續을 하기 위해 공통적인 手段이나 樣式 등 모든 共通的인 全體規則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EDI 規格」이라고 한다. EDI 規格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情報傳達規約으로 이것은 情報通信 시스템에 관한 規約으로 通信規約이라고도 부른다. 파일 傳送規格(File Transfer Access and Management: FTAM)이나 축적기능을 이용한 메시지 通信處理 시스템(Message Handling System: HMS) 등이 그것이다. 둘째, 情報表現規約으로 協의의 去來規約(business protocol)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종래부터 「데이터 코드, 포맷의 취결」이라고도 한다. 去來規約의 構成要素는 ① 標準 메시지, ②

者의 選定에 대해서도 合意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國際規則으로는 國際商業會議所에서 1987年 제정한 「貿易資料 傳送交換統一規則」(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以下 “UNCID”라 稱함)이 있지만, 통상 EDI를 이용하여 締結하는 賣買契約은 事전에 兩當事者間의 合意한 「電子資料交換協定書」(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에 의해 準據되어야 한다.

2. 賣買契約의 成立時期

일반적으로 請約者의 請約을 被請約者가 承諾함으로써 賣買契約은 성립하지만, 國際賣買契約에서는 兩當事者들이 空間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賣買契約의 成立時期는 여러가지 面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契約的인 義務의 違反에 의한 損害額(quantum of damages)은 관련된 그 義務가 개시된 이후의 時間적 經過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請約에 대한 承諾이 이루어져 契約이 성립되면 그 請約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承諾의 意思表示가 被請約者로부터 發送되어 請約者에게 到達할 때까지의 어느 時點에서 賣買契約이 성립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발생한다.

賣買契約의 成立時期에 관한 承諾의 效力發生時期에 대하여서는 發信主義, 到達主義 및 豫知主義가 있는데, 통상 英美法 및 大陸法體系에서는 承諾의 意思表示에 관해서는 到達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實務에서도 텔렉스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 到達主義의 原則을 따르지만, 郵便이나 電報에 의한 承諾의 경우 英美法과 우리 나라의 民法¹³⁾은 賣買契約成立時期에 관한 一般原則인

Syntax Rule, ③ 데이터 엘리먼트 디렉토리, ④ 데이트 코드의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業務運用規約으로 시스템 運用規約이라고도 불리우며, EDI에 의해 결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의 運用을 위한 規約이지만, 현재에는 아직 명확한 표현은 아니다. 넷째, 去來基本規約으로 EDI에 관한 法制度를 규정한 것으로서 아직 미착수된 상태이다. 이것은 契約成立時期의 問題, 어떤 구체적인 項目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法制度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到達主義의 예외를 인정하여 發信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EDI에 의한 방법의 경우 賣買契約의 成立時期는 同時性을 고려한 到達主義의 一般原則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우편이나 전보의 성립시기와 같이 距離性이나 不在性을 고려하여 發信主義를 인정하는 英美法과 같이 發信主義를 적용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¹⁴⁾ EDI에 의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VAN을 통하여 電子的 通信方法으로 데이터의 傳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承諾通知의 發信과 到達이 거의 동시적(instantaneous)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時間의 差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며,¹⁵⁾ 실제적으로 텔렉스와 같이 「real time」 메시지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¹⁶⁾ 그러므로 EDI에 의한 賣買契約成立時期에 관해서는 發信과 到達의 同時性을 고려할 때 一般原則인 到達主義가 적용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⁷⁾

우리 나라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에서도 「…電子文書는 事業者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相對方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¹⁸⁾라고 규정하여 EDI에 의한 契約의 成立은 到達主義를 따를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EDI에 의한 구체적인 賣買契約成立時期는 VAN을 이용한 경우 請約者가 연락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시켜 VAN의 메일박스(mail box)에 기억되었을 때 請約의 意思表示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한편 被請約者가 VAN의 메일박스에 照會方法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그 承諾의 메시지를 VAN의 메일박스에 기억시켰을 때 承諾의 意思表示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¹⁹⁾ EDI에 의한 賣買契約의 成立時期는 承

13) 民法 第531條 參照.

14) 相對方의 營業時間이 아니거나 혹은 夜間 등에 메시지를 傳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同時性에 다소 問題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發信主義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5) Michael S. Barm and Henry H. Perritt, JR., *op. cit.*, p.324.

16) Ian Walden, *op. cit.*, p.46.

17) 美國의 契約法인 Restatement 第64條에는 “…그 외 實質적으로 同時的인 雙方向 傳達手段에 의한 承諾은 當事者가 마주앉아 있는 경우의 承諾에 적용되는 原則으로 支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第15條.

諾의 通知가 取消不能의 상태로 VAN의 메일박스에 기억된 時點을 賣買契約成立의 時期로 보아야 한다.²⁰⁾

3. 賣買契約의 成立場所

賣買契約의 成立場所는 契約의 成立要素인 意思表示, 즉 請約과 承諾의 表示가 法律이나 慣習이 다르게 행해지고 있는 國家에서 履行되는 경우, 그 賣買契約은 어떤 法律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어떤 慣習에 따라 解釋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國際法規나 國內法에서는 契約場所와 관련하여 어떠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隔地間에 締結되는 契約에서 確定的이고 無條件의인 承諾의 效力이 발생하는 場所에서 賣買契約이 成立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場所에서의 承諾의 行爲가 단순한 去來交涉을 拘束力있는 法律的 義務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承諾의 效力發生時期는 원칙적으로 그 承諾의 通知가 相對方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유효한 承諾의 通知가 請約者에게 도달된 場所에서 賣買契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EDI에 의한 賣買契約과 관련하여 賣買契約의 成立場所는 裁判管轄權의 問題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는 賣買契約當事者가 그 準據法規를 事前에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方策이지만, 그 準據法規를 選擇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에 의한 賣買契約의 成立場所는 契約의 成立時期와 동일한 到達主義原則에 따라 契約成立地의 法規에 의해 規律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隔地者間에 締結되는 賣買契約에서는 특히 그 準據法規의 問題와 더불어 契約의 成立場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 이를 메일박스 規則(Mailbox Rule)이라고 한다(Benjamin Wright, *op. cit.*, pp.261-265 參照).

20)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p.107.

21) 宋啓儀, “EDI 去來의 法律的인 問題”, 『仲裁』, 大韓商事件法院, 1993. 7, p.16.

賣買契約의 成立場所는 契約成立을 위한 承諾의 效力이 發生하는 場所이다. EDI에 의한 賣買契約成立의 경우에도 承諾의 效力發生時期는 到達主義가 적용됨이 타당하므로 EDI에 의한 承諾의 通知가 도달된 場所에서 契約이 成立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EDI에 의한 賣買契約締結은 當事者가 空間적으로 떨어져 있고, 契約의 成立이 텔렉스와 같이 同時적이기 때문에 一般原則을 적용하여 到達主義가 적용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承諾의 意思表示가 請約者에게 到達한 場所가 賣買契約의 成立場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EDI에 의한 賣買契約은 VAN 事業者가 介入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請約에 대한 承諾이 VAN 事業者의 메일박스에 取消不可能한 상태로 承諾의 表示가 受信된 그 場所에서 賣買契約이 成立된 것으로 간주된다.²²⁾ 그러나 EDI로 賣買契約을 締結할 경우에는 그 準據法規를 미리 兩當事者間에 合意해두는 것이 좋고, VAN 事業者의 選定問題도 合意나 協定書등의 交換으로 미리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EDI 방식에 의한 賣買契約履行上の 危險 및 費用負擔의 問題

1. 危險負擔의 問題

(1) 事故에 따른 危險負擔

EDI에 의해 貿易關係 데이터 交換을 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에 의한 데이터의 滅失, 데이터의 誤謬入力, 데이터의 誤配 등 각종 事故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事故가 발생한 경우에는 送信人의 意思가 정확하게 受信人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賣買契約의 締結與否, 債務不履行 등을 기초로 하는 사실상의 法律問題가 발생할 것

22) 메일박스의 規則은 被請約者의 承諾時에만 적용이 되고, 請約者의 請約撤回時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Benjamin Wright, *op. cit.*, p.262).

으로 예상된다.

賣買契約을締結함에 있어서 EDI를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事故의 형태로서는²³⁾ 첫째, 傳送해야 할 請約內容自體가 相對方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서 情報傳達規約의 不一致, 業務運用規約의 不一致, VAN의 登錄漏落 그리고 데이터의 蓄積에 따른 障礙 등 傳送해야 할 데이터가 受信人の 메일박스에 漏落 등 어떤 이유에서 請約의 內容이 소실되거나 傳送이 遲延되는 事故危險이 있다.

둘째, 전달된 데이터가 不完全, 즉 判讀不能한 것인 경우로서 情報表現規約의 不一致나 데이터의 入力誤謬, 翻譯의 작동 잘못 등 데이터 자체의 瑕疵로 말미암아 判讀不能인 危險이 있다.

이러한 危險이 발생한 경우 危險의 負擔方法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그 危險에 따르는 損害를 負擔해야 하는가는 각종 事例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규정에 따라 負擔原則을 정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우며, 賣買契約이 締結되고 그 履行이 遲延되어 不能이 되었을 때 當事者에게 초래되는 危險의 負擔區分 역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危險負擔에 관하여 美國統一商法典은 다음 순서에 따라 賣買當事者들에게 危險을 負擔시키고 있다. 즉, 賣買目的物이 當事者 쌍방에 責任없는 사유로 滅失된 경우 그 損失을 누가 負擔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危險負擔에 관한 當事者間의 約定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²⁴⁾ 다음으로 契約에 위반한 當事者에게 危險을 負擔시키며²⁵⁾ 마지막으로 損失이 去來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가에 따라 危險을 負擔할 者를 결정하고 있다.

EDI로 賣買契約을締結할 경우 事故에 따른 危險이 발생했을 경우 賣買當事者들이締結한 標準協定書에 따라야 하며, 標準協定書에 위반한 當事者가 그 危險을 負擔해야 한다.²⁶⁾ 또한 危險負擔區間에 있어서

23)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EDI制度手續簡易化特別委員會報告書, “貿易手續におけるEDI標準協定書に関する調査研究”, JASTPRO 92-15, 1993, p.17.

24) UCC 第 2-509條 4項.

25) UCC 第2-510條.

는 請約者인 送信人과 VAN 事業者의 메일박스 사이의 區間은 送信人이 危險을 負擔해야 하는 區間이고, 被請約者인 受信人은 送信人이 傳送한 請約內容을 受信하는데 따르는 諸般危險, 즉 受信人和 VAN의 메일박스 區間까지의 모든 危險을 負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⁷⁾ 따라서 EDI에 의해 賣買契約締結을 할 경우 危險負擔의 分岐點은 送信人이 連絡方法으로서 VAN의 메일박스에 데이터를 入力하는 區間까지 送信人이 危險을 負擔해야 하고, 또한 受信人은 照會方法으로서 VAN의 메일박스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區間까지 受信人이 그 危險을 負擔해야 하기 때문에 危險의 負擔의 分岐點은 VAN의 메일박스라 할 수 있다.²⁸⁾

(2) 危險負擔에 대한 對應措置

① 受信確認

EDI에 의한 賣買契約締結에서는 費用의 절약, 시스템의 效率的 활용 등의 이유에서 請約者의 請約內容이 被請約者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장애 혹은 傳送上 事故의 발생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事故發見의 한 方策으로서 賣買契約當事者間에 있어서 受信確認은 필요하다.²⁹⁾

受信確認은 EDI로 賣買契約를 締結할때 通信事故나 기타 事故에 의해 當事者들간에 발생할 諸般危險, 즉 데이터 滅失, 誤配 등에 따른 紛爭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受信確認에 관하여 UNCID³⁰⁾나 각국의 標準協定書에서도³¹⁾ 規定된

26) 여기서 EDI를 이용하는 去來에 있어서 혼동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EDI當事者에 관한 用語의 사용이다. 즉, 이 點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危險負擔의 問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混沌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EDI에서는 그 어느 當事者도 送信人과 受信人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DI의 當事者에는 크게 ① 通信設備 提供者인 VAN 事業者, ② 메시지의 作成者, 즉 送信人, ③ 메시지의 受領人, 즉 受信人이 있다.

27) 北澤 博, EDI入門, 東京, ソフト・リサーチ・センター, p.207.

28) Benjamin Wright, *op. cit.*, pp.261-265.

29)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前掲書, JASTPRO 92-15, p.22.

30) UNCID 第7條 a項: the sender of a transfer may stipulate that the

바와 같이 受信當事者は 메시지를 受信하였다는 것을 證明하기 위하여, 그리고 受信確認의 要求를 받은 경우에는 受信確認을 지체없이 送信하여야 한다. 또한 送信人의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確認이 自動적으로 確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메시지의 送信人은 受信人에 대하여 메시지의 受信確認을 요청할 수 있다.³²⁾

그러나 EDI로 賣買契約을 締結할 경우 事故發生의 미연방지라는 관점에서 受信確認은 필요하지만, 典型的이고 大量的의 業務處理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受信確認에 대한 簡略化 方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受信確認의 簡略化 方法에 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受信確認方法은 受信한 데이터의 내용에 따른 대응의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³³⁾

또한 當事者間의 送受信의 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費用의 節約, 事故發生의 미연방지 등의 관점에서 1日의 合計處理件數를 확인하는 交叉交換(count interchange) 方式도 생각할 수 있으며, 受信한 데이터의 내용에 따른 대응의 방법으로서 送信된 데이터가 전달된 취지를 受信人이 送信人에게 통지하는 着信通知를 傳送하는 방법이나 契約承諾의 의미를 포함하는 受信確認通知를 행하는 방법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recipient should acknowledge receipt thereof. Acknowledgement may be made through the teletransmission technique used or by other means provided through the TDI-AP concerned. A recipient is not authorised to act on such transfer until he has complied with the request of the sender.

- 31) 受信確認에 관한 美國의 標準協定書 第2條 2項에서는 “受信當事者は 附屬書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機能的인 受信確認(functional acknowledgement)을 送信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의 標準協定書 第6條 2項에서는 “受信者は 受信確認의 要求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受信確認을 送信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의 標準協定書 第4條 3項에서도 같은 취지의 受信確認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2) 英國標準協定書 第6條 1項: Except where receipt of Message is automatically confirmed the sender of a Message may request the recipient to confirm receipt of the Message.
- 33)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前掲書, JASTPRO 92-15, 1993, pp.22-23.

EDI로 締結될 賣買契約에서는 受信한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受信確認을 행하고 있지만, 着信通知, 受信確認通知 등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EDI로 賣買契約을 締結할 때 예정된 兩當事者間에 協議를 거쳐 去來基本規約 또는 業務運用規約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② 不完全한 메시지의 對應

受信한 메시지의 內容이 不完全하여 受信人이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送信人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VAN 事業者의 過失에 의한 것인지 또는 受信人의 하드웨어의 고장이나 回線障碍로 인한 것인지 등 危險에 관한 負擔者는 명확히 구분짓기는 다소 힘들다. 이러한 경우 각국의 標準協定書에서는 受信人이 送信人으로 부터 불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通知義務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즉, 美國의 標準協定書에서는 “送信된 document가 이해할 수 없는 形態 혹은 不完全한 形態로 受信된 경우 受信人은 신속하게 送信人에게 合理的인 방법으로 通知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의 標準協定書에서도 “잘못이 명백하든지 혹은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受信人은 바로 그 취지를 送信人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⁵⁾라고 규정하여 불명확한 메시지의 경우 受信人에게 그 취지의 내용을 送信人에게 통지하도록 그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③ 데이터 誤配의 對應

傳送中 실수로 인하여 傳送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내용이 受信人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경우

34) 美國標準協定書 第2條 4項: (Garbled Transmission) If any transmitted Document is received in any an unintelligible or garbled form,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if identifiable from the received Document) in a reasonable manner.

35) 英國標準協定書 第5條 3項: Notwithstanding that the sender is responsible and liable for 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Message, the sender will not be liable for the consequences of an incomplets or incorrect transmission if the error is or should in all the circumstances be reasonably obvious to the recipient.

受信人は 메시지가 자기 앞으로 온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送信人에게 알리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³⁶⁾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受信人 自身の 시스템에 저장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해야만 한다.³⁷⁾

(3) 不可抗力

不可抗力은 외부로부터 去來上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 방법을 강구하여도 損害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當事者들의 責任을 한정시키고, 非凡한 事件으로 인해 야기되는 戰爭이나 當事者들의 合理的인 統制를 넘어선 상황에서 야기되는 履行不能으로부터 當事者를 免責시킨다. 실제 어떠한 사태나 상황 등을 不可抗力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EDI 去來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事態, 狀況 등을 不可抗力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天災地變이나 自然災害가 발생하여 停電, 火災, 沈水, 回線切斷 그외의 事故 등의 損害가 일어난 경우에는 EDI 當事者의 管理責任을 초월한 사태로서 不可抗力免責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⁸⁾

둘째, 官의 處分은 政府나 公的 機關이 通信, 情報交換의 금지 등 물리적으로 데이터 교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서, EDI의 현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官의 處分에 의해 EDI 當事者에게 구체적인 事故, 損害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되어 지지 않지만, 國際間的 去來를 위하여 EDI가 이용된다면 外國政府에 의한 恣意的 處分, 介入, 法令 등에 의해 데이터 交換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官의 處分도 不可抗力이라 할 수 있다.

셋째, 戰爭, 暴動, 騷擾 등은 구체적으로는 軍의 出動에 의한 通信統制, 또는 勞動爭議 등에 의한 工場閉鎖, 停電, 通信妨害 등도 不可抗力

36) 英國標準協定書 第5條 4項: If the recipient has reason to believe that such a Message is not intended for him he should take reasonable action to inform the sender and should dele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such a Message from his system.

37) UNCID 第7條 d項: ...and should dele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such transfer from his system, apart from the data log.

38) 美國標準協定書 第4條 5項.

으로 규정할 수 있다.

不可抗力에 관하여 英法에서는 不可抗力이라는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EDI 標準協定書에 따라 當事者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合意의 범위내에서 不可抗力으로서 인정되어 있다. 결국 法律上의 개념으로서의 不可抗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合意時에는 무엇을 不可抗力으로 하는가는 當事者間에 合意를 해둘 필요가 있고, 不可抗力에 해당하는 사태를 예시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국의 外國標準協定書는 不可抗力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美國의 標準協定書 第4條 5項에서는 “어느 當事者도 去來 혹은 書類에 관하여 義務不履行이 天災地變이나, 그외 當事者의 合理的 支配가 미치지 않는 원인에 의하여 (機械的, 電子的 혹은 通信上의 故障를 포함하며, 그것에 한정하지 않음) 當事者의 書類에 送受信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그 義務 不履行에 대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³⁹⁾라고 규정하여 天災地變이나 自然災害 그리고 當事者의 통제를 넘어선 事故 및 狀況을 不可抗力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標準協定書上에서는 當事者는 義務의 履行遲滯 혹은 不履行이 相對方에게 통지한 不可抗力에 기인하여, 그 履行遲滯 혹은 不履行을 이유로서, 協定違反 혹은 相對方에 대한 責任을 負擔하지 않으며,⁴⁰⁾ 勞動爭議에 의한 同盟罷業, 職場閉鎖 그 외의 형태의 勞使間의 行爲를 不可抗力에 포함시키고 있

39) No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failure to perform its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any Transaction or any Document, where such failure result from any act of God or other cause beyond such party'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mechanical, electronic or communications failure) which prevents such party from transmitting or receiving any Documents.

40) 英國標準協定書 第13條 1項: Neither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be liable to the other, by reason of any delay in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is due to any Force Majeure of which he has notified the other party; and the time for performance of that obligation shall be extended accordingly.

다.⁴¹⁾

또한 캐나다 標準協定書 第8條 2項에서는 “當事者は 本 協定에 의해 부과된 義務의 不履行이 不履行當事者の 합리적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不作為나 狀況에 의한 경우 이것에 의한 상대방의 滅失 혹은 損傷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않는다”⁴²⁾라고 규정하여 當事者の 統制를 넘어선 事故나 狀況만을 不可抗力으로 규정하고 있다.

上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國의 標準協定書上에는 일부분만을 不可抗力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賣買契約締結時 EDI에 의한 不可抗力의 明細를 天災地變, 自然災害, 戰爭, 暴動, 騷擾, 官의 處分 및 當事者들의 統制를 넘어선 事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標準協定書上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費用負擔의 問題

(1) 費用負擔의 原則

EDI로 賣買契約締結을 履行하는 경우 데이터의 傳送에 따른 通信設備의 負擔뿐만 아니라 通信費用외에 VAN 시스템을 이용하는 費用을 送信人이나 受信人중 누가 負擔해야 할 것인지 하는 問題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EDI로 데이터 교환을 행하는 경우 送信人側이 通信費用 등을 負擔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VAN 事業者가 개입하여 행하는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는 去來를 야기한 當事者가 通信費用 등을 負擔하여 행하고 있다.⁴³⁾

그러나 受益者 料金負擔에 대해 고려할 경우 傳送을 받은 데이터를

41) 英國標準協定書 第13條 2項: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Force Majeure” means, in relation to either party, any circumstanc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at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strike, lock-out or other form of industrial action).

42) A part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other caused by a failure to perform any duty imposed by this Agreement where such failure is caused by an event, omission or condition not reasonably within the control of the defaulting party.

43) 이를 行爲者負擔의 原則이라고 한다.

受信人側에서 再入力하는 時間을 절약한다는 長點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送信人에게만 料金を 부과하는 것과 같이 한쪽 當事者에게 費用을 負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EDI 方式에 의한 費用을 送信人이 負擔할 것인가 혹은 受信人이 負擔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論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兩當事者間의 協定으로서 해결될 수 있지만, 美國의 EDI 標準協定書에 의하면⁴⁴⁾ “各 當事者는 附屬書에 별도로 정한바 없는 한 자기가 契約하고 있는 提供者(VAN)의 費用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VAN 事業者와 通信契約을 締結한 者가 費用을 負擔하도록 하고 있다.

賣買契約締結을 EDI로 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費用으로서는 EDI를 사용하기 위한 初期投資費用과 運營費用으로 구분된다. 初期投資費用으로서는 모뎀 및 通信網制御裝置의 購入費, 通信回線 開設費, 컴퓨터 購入費, 소프트웨어 購入費(어프리케이션 소프트웨어, 自社 전용 소프트웨어, 自社 프로토콜과 VAN과의 변환 소프트웨어), VAN 이용시의 初期登錄費 등이 있으며, 運營費用(running cost)으로서는 回線利用料, VAN 使用料, 컴퓨터 운영경비(용지, 전력비) 등이 있다.⁴⁵⁾

賣買契約을 締結하는 當事者들의 입장에서 負擔해야 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費用 및 기타 費用은 다음과 같다.⁴⁶⁾

① 接續地點(Access Point: AP)까지의 通信費

이것은 送信人, 受信人과 VAN의 接續地點까지의 통신비, 다시 말하면 VAN까지의 電話料이고 送信人, 受信人 各各이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한다.⁴⁷⁾

② 接續費用

44) 第1條 2項 2號: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any Provider with which it contracts, unless otherwise set forth in the Appendix.

45) 北澤 博, 前掲書, pp.202-203.

46)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前掲書, JASTPRO 92-15, pp.9-14.

47) Margaret A. Emmelhainz,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 Total Management Guid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p.173.

接續費用은 月間 固定費 또는 時間當 可變費用으로서 送信人, 受信人 각각이 VAN 事業者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電文을 送受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費用이다. 이는 送信人, 受信人 각각이 VAN의 mail box까지 送受信하기 위한 것을 負擔한다.

④ 蓄積費

蓄積交換型의 EDI에 있어서는 VAN의 mail box에 데이터를 비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費用(蓄積費)을 말하며, 蓄積費는 표준적인 期間(예를 들면 3일정도) 데이터를 비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지만 보존을 위해 장기간 VAN의 메일박스에 데이터를 비축하고 있다면 費用負擔이 불가피하다.

통상 A社와 B社間의 去來에서 VAN 事業者가 개입하는 경우 VAN의 메일박스는 受信人側의 컴퓨터 파일과 동일하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受信人측은 VAN의 메일박스에 데이터를 비축해 두기 위해 필요한 費用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시스템 開發費

VAN 事業者가 개입을 행하는 데이터 교환 시스템에 대한 費用負擔에 관해서는 通信 네트워크 費用 외에도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初期投資費用을 누가 어떻게 負擔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즉, 대규모적인 시스템인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費用은 상당히 高額인 것이 통례이지만 이것을 누가 어떻게 負擔하느냐가 問題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受益者負擔原則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시스템 개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大企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퍼스널 컴퓨터에 의한 접근(access)을 가능케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費用負擔의 輕減을 도모할 수 있지만, 장래 가입할 사용자를 위해서도 시스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費用負擔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⑥ 버전 업(version up)의 費用

VAN 事業者가 개입하여 행하는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가동을 개

시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버전 없이 행해지는 경우 그 費用을 누가 어떻게 負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問題가 발생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컨대, VAN의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메일박스가 단순히 메시지를 授受하는 場所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개개의 기업메시지를 교환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버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當該 버전 없이 행해진 소프트웨어에 관계가 있는 使用者가 그 費用을 負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버전 없이 VAN 회사와 使用者 雙方에 관련되어 있는 領域에 대해 행하여 지는 것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일정한 방침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約定이 규정되지 않을 때에는 버전 없이 費用負擔問題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VAN 事業者가 개입하여 행해지는 데이터 교환 시스템 일반에 대해 알아보면, 최근에는 매년 시스템 내용을 변화시켜 점점 새롭게 하는 버전 없이 행하여 지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VAN 事業者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使用者에 대하여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VAN 事業者는 언급된 바와 같이 使用者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思考를 가질 수 있지만, 때때로 비상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使用者에게 새로운 費用負擔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VAN 事業者는 使用者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는 대단히 주의를 하고, 使用者의 離脫을 염려하기 때문에 費用이 使用者들의 직접적인 연결을 막는데에는 여러 가지의 手段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對應方法이다.

(2) 費用負擔의 分岐點

EDI에 의한 買賣契約締結에 따른 費用負擔의 分岐點은 送信인이 連絡方法으로서 VAN의 메일박스에 데이터를 入力하는 경우에는 送信인이 費用을 負擔하고, 또한 受信인이 照會方法으로서 VAN의 메일박스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受信인이 그 費用을 負擔하기 때문에 費用負擔의 分岐點은 VAN의 메일박스이다.

그러므로 去來當事者間의 EDI 去來에 있어 VAN 事業者가 개입한 경우에 있어 費用負擔에 대해서는 VAN 事業者의 메일박스를 경계로 送信人, 受信人이 각각 費用을 負擔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送信人 및 受信人이 VAN의 利用形態에 따라 費用負擔의 分岐點은 VAN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負擔區間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⁴⁸⁾

첫째, 送信人 및 受信人이 하나의 VAN을 이용하는 경우 送信人은 接續地點까지의 通信費 및 메일박스까지의 接續費用을 負擔하면 되고, 차후의 費用負擔에 대해서는 受信人이 負擔하는 것으로 된다.

둘째, 送信人 혹은 受信人中 한 當事者 自身이 VAN 事業者인 경우에는 VAN 事業을 영위하고 있는 當事者는 자체내의 VAN 메일박스에서 사용하는 費用과 蓄積費用을 負擔하고 다른 當事者는 VAN의 메일박스까지의 通信費 및 接續費用을 負擔해야 한다.

셋째, 送信人과 受信人 모두가 각각 다른 VAN 시스템에 가입한 경우 費用負擔의 分岐點은 예컨대, 甲은 A라는 VAN 事業者와 乙은 B라는 VAN 事業者와 使用契約를 締結했을 경우 甲이 乙에게 데이터를 傳送할 때에는 乙의 VAN 事業者인 B의 VAN 메일박스까지 費用을 負擔해야 하고 受信된 內容을 確認하기 위해서는 乙은 나머지 費用을 負擔해야 한다. 반대로 乙이 甲에게 데이터를 傳送해야 하는 경우에는 逆順이다.

결과적으로 費用負擔의 分岐點은 데이터 授受場所인 VAN의 메일박스를 경계선으로 하고, 메일박스까지에 소요되는 費用의 負擔은 送信人 및 受信人이 각각 負擔한다. 送信人은 제공 데이터를 그 責任과 費用負擔으로 標準規約狀態에서 메일박스에 기억해야 하며, 受信人은 기억된 데이터를 그 責任과 費用負擔으로 受信하여 이용해야 한다.⁴⁹⁾

48) 北澤 博, 前掲書, p.204.

49)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前掲書, JASTPRO 92-15, pp.12-13.

IV. EDI 方式의 賣買契約履行에 따른 電子式 通信文의 法理的 問題

1. 證憑資料로서 認定性 問題

최근 EDI 方式이 사용되면서 傳統的 종이 書類와는 달리 새로운 形態의 記錄이나 文書가 이용되는 가운데 紛爭發生時 賣買當事者들이 이용한 電子式 通信文이 중요한 法的 證據로서 機能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傳統的 종이 書類와 달리 形體가 없는 電子式 通信文에도 종이 書類에 대해 認定해 오던 것과 같은 法的 證據能力을 認定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傳統的 종이 書類의 경우 變造되거나 偽造되면 專門인 檢査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지만, 電子通信文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變造나 偽造가 가능하다.⁵⁰⁾ 傳統的 종이 書類는 去來履行過程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證憑書類로 認定을 받는다. 따라서 이를 믿고 去來하는 當事者와 第3者에게 安定性(security)을 제공한다.⁵¹⁾

그러나 EDI 去來에서 電子式으로 기록되어 저장된 情報은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만 生産이 가능한 것이므로 저장된 情報의 生産過程에서 전혀 다른 情報이 生産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저장된 情報의 단순한 再生이 아니므로 이러한 電子式 通信文이 傳統的인 종이 書類의 資料內容의 立證機能을 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不信感이나 컴퓨터 作動上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電子式 通信文이 資料內容의 證憑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하는데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電子式 通信文이 證憑資料로서 認定받기 위해서는 直接的이고 適合

50) Ian Walden, *op. cit.*, p.9.

51) 예를 들면 CIF 契約에서 買受人은 物品이 運送中에 있을 때 이를 再賣却할 수 있고 이 物品을 買入한 買受人은 物品의 存在와 狀態에 관한 證憑으로 船荷證券을 인정하게 된다.

한 資料만이 認定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그 資料의 信憑性이 존재해야 한다.

電子式 通信文의 證憑性 認定에 관하여서 1985年 UNCITRAL의 報告⁵²⁾에 따르면 컴퓨터 기록문이 法廷에서 증빙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심각한 問題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³⁾ 證憑에 관한 規則은 英美法(common law)과 大陸法(civil law)에서 모두 컴퓨터 기록문을 證憑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英美法 體系에 있어서 특히 英國에서는 컴퓨터 기록문을 證憑으로 認定하는데 問題點을 들고 있는데, 이것에는 傳聞證據의 原則(hearsay rule), 最上證憑原則(the best evidence rule) 및 提示에 관한 原則(the rule as to discovery)이 있다.⁵⁴⁾

(1) 傳聞證據의 原則

傳聞證據의 原則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證人으로 세우고, 그의 證言에 의하여 컴퓨터 기록문의 法的 證憑의 信賴性과 完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이다.⁵⁵⁾ 이를 위하여 컴퓨터 기록문을 證憑으로 인정한다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컴퓨터의 管理 및 資料의 供給에 필요한 條件을 立法化하여 이를 證憑으로 제시하기를 원하는 者は 위의 條件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證憑으로 인정하는데 대한 異意申請이 없으면 컴퓨터를 알고, 컴퓨터 管理에 責任이 있는 사람의 證明書나 陳述書의 제시로 要件이 충족된다. 이때 證人陳述의 陳述書는 反對訊問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自身이 陳述하는 事件에 직접적인 知識이 없는 證人의 證明은 傳聞으로 간주되어 證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傳聞證據의 原則은 英美法에서 인정을

52) A/CN. 9/265, presented to the 18th session of UNCITRAL in Vienna. 이 報告書는 컴퓨터가 判讀할 수 있는 形式에 있어서 貯藏된 記錄이나 傳送된 記錄의 證憑價値를 수집하는 것과 컴퓨터가 判讀할 수 있는 形式에 있어 稅關當局의 物品申告(goods declaration)의 受容性에 관한 報告書이다.

53) Rob Bergsten, *Computer Law and Practice*, 1985, p.205.

54) Ian Walden, *op. cit.*, p.12.

55) Benjamin Wright, *op. cit.*, p.122.

받고 立法化되어 刑事上·民事上 證憑으로 인정되고 있다.⁵⁶⁾

英美法體系의 裁判管轄權에서는 傳聞證據의 原則을 司法的 相續物로 인정하고 있으나, 英國에서와 같이 컴퓨터에 의하여 生成되거나 貯藏 加工된 資料를 法廷에서 證憑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 原則에 대한 例外가 인정되어 대부분의 國家가 英國의 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立法的 例外를 만들었다.⁵⁷⁾ 호주의 경우 英國立法의 問題點을 없앤 컴퓨터에 관한 구체적인 立法을 선택하였지만, 美國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기록문을 다룰 特別立法을 제정하지 않고 그러한 記錄文을 傳聞證據의 原則에 대한 例外로 인정하여 왔다. 傳聞證據의 原則에 대한 例外로 인정된 事件은 King v. Murdock Acceptance Corp. 事件⁵⁸⁾으로서 여기서 컴퓨터 記錄文이 證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된 裝備가 標準裝備이어야 하며 ② 記入이 정상적 去來過程과 明示된 事件과 同時的이어야 하고 ③ 資料面에서는 準備方法에서 證憑이 認定을 정당화할 만큼 信賴性이 있어야 함을 다른 證憑이 法廷을 납득시켜야 한다.

大陸法體系(civil law system)에 있어서는 民法이 訊問制度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傳聞證據의 原則에 따른 問題點은 없다. 여기서는 모든 事項을 고려하여 特定の 證憑에 어떤 加重值를 부여할 것인가는 法廷이 결정할 問題이지만 모든 關聯證憑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國家는 認定되는 證憑의 目錄을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컴퓨터 記錄文도 證憑으로 認定하지 않는다.

(2) 最上證憑의 原則

電子式 通信文의 證憑資料로 認定에 따른 英美法 體系上の 두번째 원칙인 最上證憑原則, 일명 原本書類의 原則(original document rule)

56) 傳聞原則을 인정하고 있는 立法例로서는 民法의 경우 Civil Evidence Act 1969 (CEA)가 있고, 刑法의 경우에는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A)가 있다.

57) Victoria Australia, Evidence Act 1958, s. 55B; Queensland Act 1977, s.95.

58) (1969) 222 So. 2 d. 393.

은 計劃的이고 不注意한 變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⁵⁹⁾ 證憑으로 複寫 書類의 使用을 禁止하는 것이다. 따라서 訴訟의 當事者가 書類의 內容을 證憑으로 提示하기 원할 경우에는 原本을 제시해야 한다. 이 原則은 옛날 筆寫本上에 착오의 危險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複寫技術의 발달로 이러한 原則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Kajala v. Noble* 事件⁶⁰⁾에서 이 原則은 필립의 복사는 그 복사물에 대한 眞正性이 증명되는 한 證憑이 될 수 있음이 判示되었다. 또한 *King v. State* 사건에서⁶¹⁾ 法院은 컴퓨터에 의한 出力도 그 眞正性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證憑資料로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Amory*와 *Pouillet*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資料는 原本에 대한 복사가 아니라 새로운 자료라는 주장에서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친 資料의 경우에는 이 原則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⁶²⁾

大陸法體系의 裁判管轄權에서 컴퓨터 記錄文의 사용에 따른 가장 큰 장애는 書類의 原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原本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法廷은 컴퓨터 복사물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⁶³⁾ 프랑스 民法典은 書類가 原本에 「忠實하고 永續的인」(faithful and lasting) 複寫物에 立證의 價値(probative value)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Amory*와 *Pouillet*가 지적한 대로⁶⁴⁾ 사라진 原本과 複寫物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그 忠實性을 판단하기 어렵다. *Amory*와 *Pouillet*는 컴퓨터 書類의 복사물은 신비한 면은 있으나 傳統的 方法에 의한 복사물만큼 信賴感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法院은 通商問題에 있어서는 복사물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쉽다. 결국 大陸法體系에서 컴퓨터 기록문을 證憑으로 사용하는데 주된 장애는 創作物의 證

59) Michael S. Baum and Henry H. Perritt, JR., *op. cit.*, p.351.

60) (1982) 75 Cr. App. Rep. 149.

61) (1969) 222 So. 2d 393.

62) Amory and Pouillet, "Computers in the Law of Evidence - A Comparative Approach in Civil and Commercial Law System", *Computer Law and Practice*, 1987, pp.114-117.

63) Michael S. Baum and Henry H. Perritt, JR., *op. cit.*, p.351.

64) Amory and Pouillet, *op. cit.*, pp.114-117.

憑으로 또는 義務 등의 條件으로 그것의 수용에 있는 것 같다.

(3) 提示에 관한 原則

컴퓨터 記錄文을 證憑資料로 認定하는데 있어서의 세번째 原則은 提示에 관한 原則이다. 民事訴訟에서 法院은 訴訟當事者에게 訴訟에 관련된 현재와 과거의 모든 關係書類를 提示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各 當事者는 相對方 앞으로 自身이 갖고 있는 모든 書類를 송부해야 하고 本人이 원한다면 이러한 書類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書類는 證憑이나 情報가 感覺적으로 이해될 수 있거나 어떤 裝備의 사용으로 이해되도록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書類는 모든 形態의 컴퓨터 매체를 포함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提示에 관한 原則은 컴퓨터 매체에 대한 檢査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컴퓨터 記錄文의 原本對照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提示에 관한 原則은 수정되어 컴퓨터 매체에 대한 별도의 明示規定이 필요하다. 이 原則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컴퓨터 記錄文에 의존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게 컴퓨터 시스템과 그 運營에 관한 것을 모두 제공하여 相對方으로 하여금 컴퓨터 記錄文과 原本과의 對照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電子式 署名에 의한 眞正性 問題

特定書類가 眞本인지 아닌지의 與否는 일반적으로 署名에 의해 이루어진다.⁶⁵⁾ 國際貿易에서의 署名은 ① 貿易書類의 源泉, 즉 書類를 작성한 者를 명확히 하고, ② 書類上의 情報를 명확히 하고, ③ 書類上 情報의 正確性 및 完全성을 署名者가 責任을 負擔하는 證據로 된다.⁶⁶⁾ 즉, 이러한 署名의 機能은 書類의 出處와 署名人을 확인해 주고, 書類의 情報內容을 확인하고 情報의 內容에 대한 署名人의 同意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署名人이 그 書類에 대하여 최종적인 責任을 負

65) 宋啓儀, 前掲論文, p.17.

66)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主要貿易書類の署名の考察, JASTPRO, 81-13, 1982, p.8.

擔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署名의 當事者는 그 書類에 구속되며, 法律的으로 인정된 署名은 相對方에게 拘束力있는 합의 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保證으로서의 效力이 있기 때문에 眞正確認의 效果가 있다.

傳統的 종이 書類는 自筆署名이나 自筆署名模樣의 고무인이 사용되며, 그 目的은 眞正性の 確認에 있다. 즉, 이것은 署名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것을 認定하므로, 그 書類는 正當한 場所에서 발행되었고 精確한 情報를 지녔다는 것이 證明된다.⁶⁷⁾

그런데 傳統的 종이 書類가 電子書類로 대체될 경우 電子式 署名이 傳統的 署名과 동등한 眞正性の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問題는 컴퓨터 記錄文이 記錄文書나 署名의 要件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電子式 署名이 國際貿易을 이행함에 있어서 國際規則이나 條約들이 이를 認定하고 있느냐 하는 點과 電子式 署名이 어떠한 方法으로 이루어 지느냐 하는 點을 차례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國際規則 및 國際條約에서 電子式 署名의 認定性에 관하여 알아 보면, 프랑스 民法典에서는 法律的 行爲는 署名된 記錄文書로 證憑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5천 프랑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나 證憑될 수 있으며 通商去來(commercial transaction)는 위의 民法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記錄文書의 발급이 불가능한 사항(material impossibility)인 경우에는 그것의 提示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電子式 通信文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美國의 統一商法典에서는 “Signature”를 署名 대신에 사용되는 부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⁶⁸⁾ 英國의 解釋法(Interpretation Act, 1978)도 “writing”을 타이핑, 인쇄, 석판인쇄

67) C.M. Schmitthoff and R.M. Good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some legal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Centre for Commercial Law Studies, 1988, p.23.

68) U.C.C. 第3-401條.

(lithography) 및 다른 가시적 형태의 언어표현 방법으로 정의하므로써 英美法에서도 電子式署名도 “writing”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1978년에 채택된 함부르크 規則,⁶⁹⁾ 1980년의 UN 國際複合運送條約,⁷⁰⁾ 및 1994년부터 시행된 第5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에서도⁷¹⁾ 機械方式 또는 電子方式의 署名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電子式 署名도 傳統的 署名과 동등한 法的 要件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1992년 우리 나라에서 공포·시행된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에서도⁷²⁾ 電子書類의 眞正性問題를 電子式 署名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電子式 署名의 方法에 관하여 알아 보면, 署名은 自身의 이름을 手記하는 口語的 意味에 한정될 수 없으며, 署名의 要件⁷³⁾만 갖추어 진다면 電子式 署名도 效力이 있다.

署名의 方法은 통상 社會通念과 商去來慣行을 고려하여 當事者들간의 合意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電子式 署名이 傳統的 署名과 동등한 法律的 效果를 갖는 여러가지 電子式 署名方法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制度로 書類의 發信人이 自身의 PIN 카드를 컴퓨터에 넣고 書類를 發送하도록 PIN에 타이프하는 署名方法이다.

둘째는 暗號(encryption) 制度로 많은 해설인들이 電子署名으로 暗號制度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方法으로, 이 制度에서는 만약 A가

69) 함부르크 規則 第14條 3項.

70) UN國際複合運送條約 第5條 3項.

71) 信用狀統一規則(第5次 改正) 第20條 b項.

72)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第14條(電子署名의 效力): 貿易業者 또는 貿易有關機關이 貿易自動化網을 이용하여 申請 또는 承認등을 한 電子書類上的 電子署名은 貿易關聯法令 등이 정한 文書上的 署名捺印으로 본다.

73) 署名의 要件은 ① 어떤 符號(some sign, symbol or mark), ② 署名者에게 唯一한 것일 것, ③ 內容에 同意하고 立證할 意圖가 있을 것 등이다(Ian Walden, *op. cit.*, p.33).

B에게 자신의 유일한 暗號를 사용하여 暗號로 발송하면 暗號는 A가 書類의 發送人임을 확인하는 方法이다.

셋째는 生物測定學的(biometrics) 方法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統制하기 위한 安全裝置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方法은 指紋이나 音聲分別 등 生物學的 特徵이 個人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方法이다.

그러나 電子的 署名에 의한 眞正性の 確認은 傳統的인 署名方法에 비해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으며, 自筆署名의 傳統은 오랫동안 慣習化되어 왔기 때문에 各國이 電子的 署名을 채용할 수 있는 當事者들의 사전 合意가 필요하다.⁷⁴⁾

3. 電子式 通信文의 形式上의 問題

請約과 承諾에 의해 賣買契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當事者는 契約條項을 기재한 契約書를 작성하여, 각자 自筆署名한 후 한통씩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契約內容에 대한 誤解를 없애고, 後日 紛爭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⁷⁵⁾

그러나 현대 契約法下에서 賣買契約은 口頭로서도 成立可能하며, 行爲에 의해서도 可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賣買契約의 形式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통상 賣買契約自體가 法の 保護를 받을 수 있는지의 與否는 보통 形式보다 그 內容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정한 形式에 의하지 않으면 法的 拘束力이 없는 賣買契約도 있다.⁷⁶⁾

賣買契約履行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電子式 通信文의 形式上 問題로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74)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p.106.

75) 新堀 聰, 貿易賣買, 東京, 同文館, 1990, p.56.

76) Law of Property Act (1925) 第40條는 “...賣買契約은 書面으로 작성되고 兩當事者에 의해 法律的으로 인정되는 署名이 없는 한 유효한 契約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통상 賣買契約當事者들은 각기 다른 賣買契約書式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만일 서로 다른 樣式의 賣買契約書를 사용할 경우 書式의 前面에 기재된 賣買契約條件, 예컨대 品質條件, 數量條件, 價格條件 등에 관해서는 일치하지만, 기타 條件 특히 書式의 裏面에 인쇄된 約款에 대해서는 서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⁷⁷⁾ 이 경우 賣買契約의 成立與否와 兩書式間의 우선 適用與否가 問題가 될 수 있다.⁷⁸⁾ 이러한 紛爭, 즉 書式의 交戰을 피하기 위해서는 賣買當事者들이 書式의 중요한 條項에 관하여 철저히 交渉하여 서로 相異한 점을 없애고 合意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지만, 書式間의 內容이 相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契約이 履行되어 그 후 物品의 品質, 狀態 등에 관해 紛爭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書式의 條項에 적용을 받을 것인가하는 問題가 대두하게 된다.

EDI의 경우 이러한 貿易書式의 交戰에 관한 問題點들을 해소하고, EDI에 의한 契約締結의 경우 EDI의 有用性을 극대시키기 위해 각국에서는 貿易標準協定書를 제정하였다. 즉, 美國에서는 美國辯護士協會에서 제정한 「Model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rading Partner Agreement」⁷⁹⁾를, 英國에서는 「The Standar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⁸⁰⁾, 그리고 캐나다 EDI協會에서 제출한 「Model Form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rading Partner Agreement」⁸¹⁾를 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協定書들은 EDI에 의한 去來의 促進을 위한 送受信의 內容, 去來條件, 資料의 保護등의 內容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87年 國際商業會議所에서도 UNCID를 제정하여 EDI로 賣買契約을 締結할 경우 EDI 사용에 따른 規約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엔

77) Michael S. Baum and Henry H. Perritt, JR, *op. cit.*, pp.322-323.

78) 이러한 狀況을 書式의 交戰(The Battles of Forms)이라고 한다(여기에 관해서는 UCC 第2-207條 參照).

79) TRADE/WP. 4/R.652, 22 December 1989.

80) TRADE/WP. 4/R.706, 27 June 1990.

81) TRADE/WP. 4/R.732, 4 December 1990.

유럽 經濟委員會(UN/ECE)內的 貿易手續簡素化委員會(Working Party 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WP. 4)는 國際標準化機構(ISO)와 協約으로 EDIFACT를 세계적인 標準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UN/ECE에서는 현재 物品의 注文, 管理, 引渡, 輸送, 通關, 金融, 損害保險의 분야에서 약 95여종의 유엔 標準 메시지(United Nations Standard Messages: UNSMs)를 개발 중에 있다. 특히 賣買契約에 관한 표준 메시지로서 購買注文書(Purchase Order Message)가 있으며, 그의 현재 商業送狀에 관한 標準 메시지가 확정되어 소개되고 있고, 船荷證券에 관한 메시지도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商工資源部產下 韓國貿易情報通信에서 1993年 2月 현재 貿易自動化 電子文書を 商易行政部門 12종, 外換部門 8종, 通關部門 2종, 運送部門 3종, 保險部門 2종, 共通部門 2종 등 총 29종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⁸²⁾

둘째, 통상 貿易去來의 일련의 節次는 요구되는 書類의 授受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書類의 授受를 迅速하게 하기 위해서는 貿易關聯書類를 보다 빨리 作成·處理·傳送해야 한다.

현행 貿易去來에 수반되는 書類作成의 業務는 방대한 費用·노력·시간을 要하며, 目的地에서의 貨物引渡를 遲延시켜 商機의 喪失, 費用의 增加, 나아가서는 國際貿易增進의 장애요인이 되어 國際競爭力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貿易關聯業者 및 政府當局의 일방적인 要求를 충족시키기 위해 書類의 種類가 방대해 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書類에 별도의 데이터를 새로 記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든가, 같은 內容의 情報도 여러 번 반복하여 記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傳統的 종이 書類는 그 書類 자체가 象徴的 意味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⁸³⁾

82) 商工資源部, 貿易自動化業務處理要領, 1993. 2, 參照.

83) 船荷證券은 物品에 대한 權利證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船荷證券의 讓渡는 船荷證券上에 나타난 物品의 權利讓渡가 된다는 점에서 象徴的 機能

이러한 傳統的 종이 書類의 機能이 電子式 通信文로 달성될 수 있는지 또는 동일한 法的 機能을 갖는 電子式 通信文이 고안될 수 있는지 問題이다.

이 問題에 관하여서는 Ian Walden 教授는 “各各의 法律的인 規程에서 사용된 書面(writing)과 署名(signature)이라는 用語의 解釋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⁴⁾ 1978년에 제정된 英國의 解釋法(The Interpretation Act)에서는 “書面은 可視的 形態(visible form)로 文言을 작성하는 타이핑, 프린팅, 석판인쇄, 사진인쇄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⁵⁾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可視的 形態라는 解釋과 기타 다른 手段이라는 解釋으로 인하여 EDI에 의한 電子式 通信文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EDI를 이용하여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에 법원이 「書面 및 署名」이라는 用語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解釋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電子式 署名은 貿易關係法令 등이 정한 文書上의 署名捺印으로 보기 때문에 形式的인 面에서 問題點이 없다.

電子式 通信文의 形式에 관해서는 UN에서 제정한 유엔 書式設計基準⁸⁶⁾(UN Layout Key: UNLK) 또는 國內基準에 合致해야 한다.

을 갖게 되며, 換어음도 流通可能書類로 讓渡可能한 延支給債務를 발생 시킨다.

84) Ian Walden, *op. cit.*, p.47.

85) Interpretation Act 1978, Schedule 1.

86) UNLK(United Nations Layout Key)란 貿易書式의 페이지와 標準化를 위해 貿易과 國際輸送에 이용되는 書類를 標準化한 書式으로 유엔이 이것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貿易書類 作成方法에 상관없이 貿易을 구성하는 行政, 商業, 生産, 流通에 관계하는 書類의 樣式(design)에 응용가능하다. 특히 一括作成方式(One Run Method)에 의한 마스타(master) 書類를 작성하고, 自動 데이터 處理(Automatic Data processing; ADP)에 의한 書式을 말한다(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貿易關係EDI用語集, JASTPRO 89-13, 1990, p.103).

V. 結論

컴퓨터의 普及과 通信施設의 發達로 인하여 EDI를 이용하여 契約을 締結하거나 또는 法的 拘束力이 있는 契約當事者間의 合意의 證據로서 EDI에 의한 電子式 通信文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EDI가 보편화됨에 따라 EDI 방식에 의한 賣買契約은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問題는 EDI에 의해 賣買契約이 成立되기 위하여는 契約法의 기본적인 法理에 대하여 EDI 技法의 應用, 즉 請約과 承諾을 통지하는 手段에 대해 EDI를 어떻게 應用하는가에 달려 있다.

實務的으로 EDI를 이용하여 賣買契約을 締結하는 경우 問題의 발생 여부에 관해, 契約成立의 手段으로서 EDI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무런 부수적인 問題를 야기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며, 賣買契約의 請約과 承諾은 口頭, 書面 또는 기타 行爲 및 手段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EDI에 의한 請約과 承諾도 有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請約의 手段이 EDI이면 承諾도 EDI에 의한 通信手段을 이용하면 된다.

EDI에 의한 賣買契約의 成立時期 및 場所에 관하여서도 통상 VAN을 통하여 電子的 通信方法으로 데이터의 傳送이 이루어지며, 承諾通知의 發信과 到達이 거의 同時的(instantaneous)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一般原則인 到達主義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賣買契約成立時期 및 場所는 VAN을 이용한 경우 請約者가 連絡方法으로 데이터를 入力시켜 VAN의 메일박스에 기억되었을 때 請約의 意思表示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한편 被請約者가 VAN의 메일박스에 照會方法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그 承諾의 메시지를 VAN의 메일박스에 기억시켰을 때 承諾의 意思表示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承諾의 通知가 取消不能의 상태로 VAN의 메일박스에 기억된 時點을 賣買契約成立의 時期로 보고, 그 場所가 賣買契約의 成立場所로 간주된다.

그리고 賣買契約締結에 따른 危險 및 費用의 問題는 賣買當事자들이 締結한 標準協定書이 우선 적용되지만, 통상 危險 및 費用負擔區間에 있어서는 送信인과 VAN 事業者의 메일박스 사이의 區間은 送信인이 危險을 負擔해야 하고, 受信인은 送信인이 傳送한 請約內容을 受信하는데 따르는 諸般危險, 즉 受信인과 VAN의 메일박스 區間까지의 모든 危險을 負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DI에 의해 賣買契約締結을 할 경우 危險 및 費用負擔의 分岐點은 VAN의 메일박스이다.

또한 EDI에 의한 賣買契約締結에서는 請約內容이 被請約者에게 전달된 경우 시스템의 障礙 혹은 傳送上の 事故의 발생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滅失, 誤配등에 따른 紛爭의 소지를 방지하고 事故發見의 한 方策으로서 受信確認은 필요하지만, 典型的이고 大量的의 業務處理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受信確認에 대한 簡略化 方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電子式 通信文의 法理的 問題點에 관하여 電子式 通信文이 證憑資料로서 認定받기 위해서는 直接的이고 適合한 資料만이 認定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그 資料의 信憑性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電子式 通信文은 法的인 側面에서 하등의 問題가 없으며, 證憑資料로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EDI에 의한 電子式 通信文은 電子式 署名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眞正性 問題는 國內法規와 國際規則를 통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貿易에 관련된 當事자들이 이에 대한 認識과 諸般施設의 確保 등이 실질적 運用상의 問題로 예상된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향후 國際貿易去來는 EDI에 의한 情報通信으로 轉換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貿易業務節次 및 貿易에 관련되는 書類들은 모두 電子式 通信文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貿易節次가 EDI 方式으로 轉換될 경우 貿易關係 當事자들은 EDI의 法理的 問題點을 이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貿易去來의 不確實性을 除去하기 위해서는 만일 當事자들이 EDI로 去來를

이행할 경우 반드시 兩當事者間에 協定書を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政府 차원에서도 보다 과감한 投資를 하여 완전한 通信網을 구축하고 많은 弘報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貿易去來 當事者들도 보다 모범적인 EDI 去來協定書を 만들어 國際貿易에 있어서 보다 우위에 있는 去來關係를 締結하여야 한다.

參考文獻

- 金安植, 新貿易制度論, 法文社, 1990.
- 鄭祥植, 貿易事務自動化論, 螢雪出版社, 1993.
- 吳世昌, 貿易契約論, 東星社, 1991.
- 宋啓儀, “EDI 去來의 法律的인 問題”,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1993. 7.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 韓國貿易協會, 『貿易』, 1991年 9月號.
- 韓國貿易協會, 『貿易標準化와 UN/EDIFACT』, 1889. 11.
- 商工資源部, 『貿易自動化業務處理要領』, 1993, 2.
- 末川, 契約法(上卷), 岩波書店, 1975.
- 新堀 聰, 貿易賣買, 東京, 同文館, 1990.
- 北澤 博, EDI入門, 東京, (株)ソフト・リサーチ・センタ, 1991.
-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EDIFACT 가이드ブック, JASTPRO
91-02, 1991.
- 通商産業省 編, 最新EDI事情, 東京, 工業調査會, 1990.
-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主要貿易書類의 署名의 考察”, JASTPRO
81-13, 1982.
- 『EDI制度手續簡易化特別委員會報告書』, JASTPRO 92-15, 1993.
-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貿易關係EDI用語集, JASTPRO 89-13,

1990.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海上・航空貨物に係る輸出入制度手續の調査研究”, JASTPRO 89-16, 1990.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EDIFACTガイドブック, JASTPRO 91-02, 1991.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貿易手續のEDI化に係る法的問題”, JASTPRO 91-19, 1991.

Amory and Pollet, “Computers in the Law of Evidence - A Comparative Approach in Civil and Commercial Law System”, *Computer Law and Practice*, 1987.

Baum, Michael S. and Henry H., Perritt. JR, *Electronic Contracting, Publishing and EDI Law*, Wiley Law Publications, 1991.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Bergsten, Rob, *Computer Law and Practice*, 1985.

Data Interchange Standards Association, Inc., *An Introduction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1990. 5.

EDI Publications, Inc., *EDI FORUM: The Journal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1989.

Emmelhainz, Margaret A.,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 Total Management Guid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Guest, A.G.,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1984.

Henriksen, Roger, “Signature and Evidence” (UN/ECE Doc. TRADE/ WP.4/R98) in Legal Acceptance of International Trade Data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Special Paper No. 3*, 1983.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No.

470-37/72, 1992. 5. 5.

Reinskou, K.H., *Bills of Lading and Automatic Data Processing*,
Norwegian Committee on Trade Procedure, 1982.

Schmitthoff, C.M. and Goode, R.M.,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some legal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Centre
for Commercial Law Studies, 1988.

Sokol, P.K., *EDI: The Competitive Edge*, New York, 1989.

Sparling, T.A., *Facilitation of TRansport Procedures*, JASTPRO
79-02, 1979.

UNCITRAL, "Legal Value of Computer Record", *Report of
Secretary General*, A/CN. 9/265, 1985.

Walden, Ian and Savage, Nigal, "The Legal Problems of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ss Law*, 1989.

Walden, Ian, *EDI and the Law*, London, Blenheim Online Ltd., 1989.
U.C.P. 500, 1993.